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8. 31 선고 2020나222031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8. 31 선고 2020나222031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2. 15 선고 2020가단555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

변론종결 2021. 7. 20.

판결선고 2021. 8. 31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2. 15. 선고 2020가단555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주식회사 E사이의 2019. 11. 7.자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부산G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금속공사대금 47,000,000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7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황현찬, 판사 이효두, 판사 박이규